

# 투표를 위한 유급 휴가

투표소는 모든 선거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합니다

유권자가 개장 시간 동안 직장에서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주 전체 선거에서 근무 시간 이외에 투표를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법은 유권자가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의 근무 시간을 유급 휴가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유권자는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최대 2시간 동안만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투표를 위한 유급 휴가는 정규 교대 근무가 시작 또는 종료될 때에만 사용할 수 있고, 유권자가 고용주와 달리 조정하지 않는 한, 그 중에서 투표를 위한 가장 자유로운 시간과 최소한의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유권자가 선거일로부터 3근무일 전에 투표를 위한 유급 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최소한 2근무일 전에 고용주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투표를 위한 직원 유급 휴가와 관련된 고용주에 대한 통지문

---

주법(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14001조)에 의하면, 고용주들은 주 전체 선거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유급 휴가를 받는 조항들을 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통지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이 통지문의 샘플은 이 페이지의 반대쪽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통지문은 모든 주 전체 선거일로부터 최소한 10일 전에 근무 장소(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 또는 직원들이 근무 장소를 오가면서 볼 수 있는 다른 장소에 눈에 잘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이 통지문이나 다른 선거 관련 정보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의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직원들은 근무 시간 이외에 투표를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경우, 투표할 목적으로 유급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법의 의도는 직무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없는 근로자들에게 투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투표소는 모든 선거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합니다.

직원들은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최대 2시간 동안만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투표를 위한 추가 유급 휴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교대 근무가 시작 또는 종료될 때에만 유급 휴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